

『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윤종호 의원

2. 제안이유

-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동시 개정

3. 주요내용

-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“「구미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」 제 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” 추가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, 「국토기본법 시행령」 제5조, 국토교통부령 「도시개발법 시행규칙」 제9조
- 예산관련 : 해당없음
- 부서의견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□ 본 「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
- 「구미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」가 제정됨에 따라, 관련 조문을 같이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, 위원회의 심의대상(안 제20조)에 「구미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」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타당 하다고 판단됨.